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819
----------	------

제출년월일 : 2016. 4. 12.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정이유

-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시 지역특성을 살린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안 제1조(목적) : 창의적 인재육성과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활용
- 나. 안 제3조(교육센터 설치 및 명칭) : 교육협력센터의 명칭을 『안산시 행복교육협력센터』
- 다. 안 제5조(교육센터의 운영) : 교육센터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3년으로 함.
- 라. 안 제7조(공무원의 파견) :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
- 마. 안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 세부사업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둠.
- 바. 안 제18조(교육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교육센터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시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교사를 파견 요청할 수 있음.
- 라. 안 제19조(지도·점검등) : 시장은 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음.

□ 제정조례안 : 불임1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2

- 민법 제32조,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 2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7조
-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참조(불임3)

□ 사전예고결과 : 의견반영

- [기간 : 2016. 2. 4. ~ 2. 15(12일간)]
- 의견9건(시의원, 감사관, 자치행정과 등) 반영

1. 조례 제목변경 관련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비고
안산시 의회 전준호 의원	<p>-안산형 혁신교육 지원조례는 5년간의 혁신교육을 지원하는 단기적 조례로 지속성을 위해 안산시와 교육청의 협력체인 센터를 조례명에 사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함.</p> <p>예시)안산시 행복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수정전 조례안)</p> <p>안산시 <u>안산형</u> 혁신교육 지원 조례 제2조(정의)</p> <p>1. “<u>안산형 혁신교육</u>” “<u>교육</u>”</p>	<p>-당초 검토에 따르면, 전준호 의원이 제시한 조례명 변경안 『안산시 행복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용하여 동 조례 1조에서 2조까지 변경하고자 하였으나,</p> <p>-우리시 의견을 종합한 바, 조례안 제목과 같은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의견 제출자인 안산시 의회 ‘전준호 의원’이 입법부 소속으로 향후 조례 안건제출시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p> <p>-당초안을 인용하되, ‘<u>안산형</u>’이라는 모호한 개념의 제목을 단순화하여 『<u>안산시 혁신교육 지원조례</u>』로 정정하고, ‘행복 교육모델’이라는 단어도 수정 (조례안 수정)</p> <p>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 제2조(정의)</p> <p>1. “혁신교육” “교육” (제목과 제2조 1항 수정)</p>	수정반영

2. 위원회 격상 검토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비고
평생 교육과	- 안산형 혁신교육 지원조례중 행복교육운영위원회는 당초 실무형으로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구성운영하려 하였으나, 혁신	- 행복교육운영위원회의 주요 사업등을 검토해 볼 때 당초 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에서 부시장으로 격상하는 것으로 수	수정반영

	<p>교육의 중요성과 위원회의 위상, 위원회 권한등으로 미뤄볼 때 위원장을 격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p> <p>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③ 위원장은 시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p>	<p>정</p> <p>(조례안 수정)</p> <p>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③ 위원장은 시 부시장이 되고,</p>	
--	--	---	--

3. 조례(안) 제15조에 위원회 존속기한 추가 및 순차적 조순 변경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비고
자치행정과	<p>-원안에 위원회 존속기한에 대한 조문이 누락되어 보완 필요</p>	<p>-제15조(재능기부 봉사자 운영)에 위원회 존속기한 조문을 삽입하고 나머지 조항 순서를 순차적으로 변경</p> <p>(조례안 수정)</p> <p>제15조(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4. 조례(안) 제18조(지도 · 점검 등) 사후평가 관련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비고
안산시 의회	<p>-사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효과성 판단 반영 요청</p>	<p>-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견반영</p>	
주미희 의원 (화요)	<p>(수정전 조례안) 제18조(지도 · 점검 등)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p>	<p>(조례안 수정)</p> <p>제19조(지도 · 점검 등)</p> <p>①.....</p> <p>② 시장은 매년 교육센터의</p>	반영

간담회시)	<p>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p>	<p>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본문을 1조로 변경하고 2조를 신설함)</p>	
-------	-----------------------------------	--	--

5. 조례(안) 제4조(교육센터의 주요사업) 관련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비고
감사관	<p>제4조(교육센터의 주요사업) 교육센터는 학교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학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교육센터가 승인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교육센터 승인 조건은 중복규제로 삭제^④)</p>	<p>제4조(교육센터의 주요사업) 교육센터는 학교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수정반영

6. 조례(안) 제5조(교육센터의 운영)제1항 관련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비고
감사관	<p>제5조(교육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교육센터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p>	<p>제5조(교육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교육센터를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 기간,</p>	반영

	<p><u>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p> <p>③</p> <p>(법률의 지정 모호, 민간위탁 조례 규정 준수^{〔註〕})</p>	<p><u>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u></p> <p>③</p>
--	--	--

7. 조례(안) 제6조(교육센터의 운영)제2항 관련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비고
감사관	<p>제6조(운영비 등의 지원)</p> <p>①</p> <p><u>② 시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u></p> <p>(민간경상보조사업의 근거규정 마련^{〔註〕})</p>	<p>제6조(운영비 등의 지원)</p> <p>①</p> <p><u>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③ 시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p>	반영

8. 조례(안)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등) 제2항에서 장학사 관련 규정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비고
안산교육지원청 김진선 초등교육지원과장	<p>-장학사는 교육청 6급보직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교육전문직으로 변경시 장학관, 장학사 등 폭넓은 운영위원을 구성할 수 있어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임.</p> <p>(변경전 조례안)</p> <p>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p> <p>①</p>	<p>-6급상당의 장학사로 한정하지 않고 5~6급 상당의 교육전문직으로 변경하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p>(조례안 수정)</p> <p>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p> <p>①</p> <p>②</p>	반영

	<p>②</p> <p>1.</p> <p>2. 교육지원청 소속 <u>장학사</u> 및 관내 학교 교직원</p> <p>3.</p>	<p>1.</p> <p>2. 교육지원청 소속 <u>교육전문직공무원</u> 및 관내 학교 교직원</p> <p>3.</p> <p>(제8조 2항 2호를 수정함)</p>	
--	--	--	--

9. 조례(안) 제8조(교육센터의 운영)제2항 외부위원 관련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비고
감사관	<p>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p> <p>①</p> <p>② 위촉·구성한다.</p> <p>1. 시의회 의원</p> <p>2.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및 관내 학교 교직원</p> <p>3.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학부모 및 전문가 등</p> <p>③</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 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한다.</p> <p>⑤</p> <p>(투명성 제고)</p>	<p>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p> <p>①</p> <p>②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비율이 2분의1 이상 이 되어야 한다.</p> <p>1. 시의회 의원</p> <p>2.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 문직 및 관내 학교 교직원</p> <p>3.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학부모 및 전문가 등</p> <p>③</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 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p> <p>⑤</p>	반영

< 붙임1 >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 이란 경기도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지향하는 교육에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인프라를 결합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혁신교육지구”란 안산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협약을 통하여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상호 협력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기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5. “전문가”란 교육전문가로서 교육학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센터 설치 및 명칭)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창의교육을 통한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안산시 행복교육협력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학교 또는 관공서 유휴시설 중 하나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한다.

제4조(교육센터의 주요사업) 교육센터는 학교 교육 운영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개발·기획 및 보급
2. 교육관련 사업 평가 및 컨설팅
3.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구축
4.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5.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6. 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운영
7.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교육센터를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교육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교육센터의 운영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행복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시 교육업무 담당 국장과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15명 이내로 위촉 하되, 외부위원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3.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부모 및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시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안산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1. 혁신교육지구 대상사업
 2. 대상학교 선정
 3. 위원회 사업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사업 방향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자문
 5.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 지역사회 의견 수렴
 6.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 의결한 사항은 『경기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안산 교육 주민참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련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 : 연 2회 이내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 장소 및 안전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 중 심의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

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재능기부 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사업별로 필요한 재능기부 봉사자를 모집 또는 육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는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교육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교육센터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로 한다.

② 교육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센터는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

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교육센터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평생교육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평생교육과장 정 천 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전 화	교육지원제장 이 태 성 (행정 2124)
	담당자 성명·전화	이 혁 (행정 3458)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819
----------	------

제안년월일 : 2016. 4. 12.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은 혁신교육사업의 포괄적 지원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주요내용이 혁신교육협력센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에 부합되는 제명으로 수정함.
- 혁신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도록 하며, 혁신교육 협력센터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안산시 교육발전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도록 함.

□ 주요골자

- 제명을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함.
(안 제명)
-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 (안 제3조)
- 혁신교육협력센터의 위탁규정을 삭제함. (안 제5조)
- 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담당국(원)장으로 수정함.(안 제8조제3항)
-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안 제9조제3항)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를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안 제2조제5호 중 “교육학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를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로 한다.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학교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혁신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행복교육협력센터”를 “혁신교육협력센터”로 한다.

안 제5조(종전의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3. 인적·물적 네트워크 및 교육인프라 구축

안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에 따른 법인,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전문기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교육목적 협동조합과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8조제1항 중 “행복교육운영위원회”를 “혁신교육협력센터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 교육업무 담당 국장”을 “시 교육업무 담당 국(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 부시장”를 “시 교육업무 담당 국(원)장”으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에 제출”을 “협의회를 통하여 협력하고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은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u>4.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u></p> <p><u>5.~8. (생략)</u></p> <p>제5조(교육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교육센터를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p>	<p><u>4. <삭제></u></p> <p><u>4.~7. (원안 제5호~제8호와 같음)</u></p> <p><삭제></p>
<p>제6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원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에 따른 법인,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전문기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교육목적 협동조합과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삭제></p>
<p>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교육센터의 운영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u>행복교육운영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 ----- ----- 혁신교육협력센터운 영위원회 ----- -----</p>

제정안	수정안
<p>② 위원회 위원은 <u>시 교육업무 담당 국장과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u>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15명 이내로 위촉 하되, 외부위원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1. ~ 3. (생략)</p> <p>③ 위원장은 <u>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시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u></p>	<p>② -----시 교육업무 담당 국 <u>(원)장 -----</u></p> <p>-----</p> <p>-----</p> <p>-----</p> <p>-----</p> <p>1. ~ 3.(원안과 같음)</p> <p>③-----<u>시 교육업무 담당 국(원)장-----</u></p> <p>-----</p> <p>-----</p>
<p>제9조(위원회 기능) ① (생략)</p> <p>1. (생략)</p> <p><u>2. 대상학교 선정</u></p> <p><u>3. ~ 6. (생략)</u></p> <p>② 제1항에 따라 심의 · 의결한 사항은 『경기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안산 교육 주민참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p>	<p>제9조(위원회 기능) ① (원안과 같음)</p> <p>1. (원안과 같음)</p> <p><u>2. <삭제></u></p> <p><u>2. ~ 5. (원안 제3호~제6호와 같음)</u></p> <p>② -----</p> <p>-----</p> <p>-----</p> <p>----- 협의회를 통하여 협력하고 조정</p> <p>-----</p>
<p><u><신설></u></p>	<p><u>③ 제1항에 따라 심의 · 의결한 사항은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u></p>